

##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

(당사 인사관리규정 별표39)

○ 채용비리 피해자 :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자

###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

■ (피해자 특정 가능시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

\* 예 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

- 필기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

- 서류단계 피해 →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

· (피해자 특정 불가시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

\* 예 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면접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

- 필기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

- 서류단계 피해 →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

\*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

### ② 부정합격자 확정·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

### 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

■ (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)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

■ (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)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